

#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(예시)

위 치 : 구 동 번지 호

부설주차장 소유주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부설주차장 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및 ○○○구청장(또는 ○○○동장) 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·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약정은 “갑”이 부설주차장(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)을 야간개방 하고 “을”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무)** ① “갑”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 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, “갑”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○개월 전에 이를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③ “병”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·배정·요금징수·주차권스티커 발급,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(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·배정,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“갑”의 의무로 한다)

**제3조 (부설주차장 개방시간)**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

1. 평 일 :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
2. 토요일 :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
3. 공휴일 :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
4. 전 일 : 24시간 개방

**제4조 (이용기간)** (야간)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○개월로 하되, ‘갑’ 또는 ‘을’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.

**제5조 (주차요금)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○만원으로 하며, 주차요금은 ○개월 단위로 ‘병’ 이 징수하여 ‘갑’ 에게 지급한다.**

**※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**

**제6조 (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)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**

1. “을”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“을”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(10분당 :        원)을 징수할 수 있다.
2.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“을”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“병”은 공영주차장·견인 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·보관 비용 (주차요금) 등 모든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
3. “을”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“갑”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.
4. “을”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.
5.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하는 “을”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“갑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6. “을”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7. “을”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,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) “을”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“갑”이 이 사실을 “병”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“을”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. 다만,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“을”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.**

**제8조 (민·형사상 책임 등)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을”에게 있으며, “갑”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**

1.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
2.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

3. “을”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

4.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및 비용

**제9조 (기타)**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.

**제10조 (약정의 효력 등)** ① 이 약정의 효력은 “갑”과 “을”과 “병”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·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. .

(갑) 부설주차장 소유주

성 명 (인)

주 소

(을) 부설주차장 이용자

성 명 (인)

차량번호

주 소

(병) 000 구청장

〈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 등 각종 양식 〉

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 (건물주)					
신청인 (건축주 또는 관리인)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서울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번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호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
법정 부설주차장 현황	계	옥내	옥외	기계식	
				옥내	옥외
	대	대	대	대	대
주차장 개방면수	대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m <sup>2</sup> )				
야간개방 시간	①평 일 : 오후            시부터 익일 오전            시까지				
	②토 요 일 : 오후            시부터 익일 오전            시까지				
	③일(공)휴일 : 오후            시부터 익일 오전            시까지				
	④전 일 : 24시간(평,토,일 모두 주차가능)				
건물의 주차장 이용특성	※ 야간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				
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.					
2015   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		
신청인(건물주) :			(서명 또는 인)		
○○구청장 귀하					
첨부 : 약정서 1부					

##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주차 신청서(이용자)

신청인  (야간주차장 이용자)	성명		주민등록 번호		
	신청 차량	차량번호		차명	
		등록주소			
	주소	서울시          구          동          번지          호			
		전화번호		집 H·P	
주차장 이용면수	면 (          m <sup>2</sup> )		지정구획(면)		
야간이용시간	①평 일 : 오후          시부터          익일          오전          시까지 ②토 요 일 : 오후          시부터          익일          오전          시까지 ③일(공)휴일 : 오후          시부터          익일          오전          시까지 ④전 일 : 24시간(평,토,공 모두 주차가능)				
비고					

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구획 이용을 신청합니다.

2014    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(이용자) : 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○○구청장 귀하

첨부 : 약정서 1부

#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

(앞면)

신청인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		전화번호	자택) 직장)	
주차시설 개선계획	주차장 위 치	구 동 번지 호						
	주차대 수현황	계	옥외	옥내	기계식	야간개방 주차대수	대 ㎡	
	형 태	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(     ), ② 시설변경 설치(     ) ③ 보안시설(CCTV 등) 설치 (     )						
	시 설 내 용	구체적으로 기재						
	공 사 기 간	착공(2014.     .     ) ~ 완공(2014.     .     )						
<p>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4 년     월  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    (인)</p> <p>○ ○ 구 청 장 귀하</p>								
<     확     인     사     항     >								
담 당 자	소 속				직 급			성 명 (인)
기존주차 시설확인	대 (정상사용 여부확인)			신청자 의사 확인		설치함(     ), 설치안함(     )		
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	“구체적으로 기재”				기 타 의 견			



# 동 의 서

## 1. 인적사항

- 성 명 :
- 주민등록번호 :
- 주 소 :

## 2. 주차장 현황

- 주차장 위치 : 구 동 번지 호
- 야간개방 주차대수 : 대, 주차장 면적 :  $m^2$

## 3. 보조금액 : 원

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·시설변경·보안시설(이하 주차시설)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(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),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,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15 년 월 일

건물주 : (인)

○ ○ 구 청 장 귀하



#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확인 복명서

결재	담당	담당팀장	과장

## 1. 설치개요

- 공사기간 : . . . ~ . . .
- 설치장소 : 구 동 번지 호 ( 통 반)
- 설치자 :
- 설치현황도

### <주차시설 배치도>

## 2. 시설현황

- 야간개방 주차대수 : 대 (시설면적 :  $m^2$ )
- 시설형태
  -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( ), 시설변경 설치( ), 보안시설 설치( )
  - 시설내용 :
- 설치비용 : 원

## 3. 첨부서류

- 합의서 1부.
- 견적서 또는 영수증.
- 전·중·후 사진.
- 은행통장(사본) 1부. 끝.

2015 년 월 일

직 성명 (인)





##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가능 통보서

□ 수 신 : 귀하

□ 발 신 : 동장

귀하께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해 (주차구획 보수, 시설변경, 보안시설 설치공사)를 하고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부,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 및 보조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○ 주차장 위치 : 00구 동 번지 호

○ 주차시설개선 가능여부 : 가능( ), 불가능( )

○ 불 가 사 유 :

○ 보 조 금 액 : 원

※ 공사완료시 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하여 공사완료를 신고하여야만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니, 반드시 공사현장의 전·중·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완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문의전화 : - )

2015 년 월 일

담당자 소속 : 구청

성명 : (인)

##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전경 사진

구분	신청인	성명	주차시설 내용
		건물위치	
전			
후			